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

한농연중양연합회(회장:박의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이승호)는 지난 8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지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가에 불법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의 무효화와 환급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정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위헌소송 제기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무엇인가?

정부의 2005년 8·31 부동산 정책의 추진 입법으로 2006년 1월 11일에 새로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7월 12일부터 신설된 부담금이다.

지난 2월, 농림어업용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농업인에게 잘못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한 금액은 1,949농가,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기반시설부담금 소송을 제기한 배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농가에게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잘못 부과하고 강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농업계의 거센 항의를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7년 2월 28일부터는 농업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폐지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한 농업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구제책 마련도 거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재발 방지와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입장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농연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은 “신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 기반시설 구축용 목적세 임에도 엉뚱하게 축사 등 생산시설에 부과 되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도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은 정부 정책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당연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떠한 구제방안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진(고창·부안)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을 강력히 주장했다.

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문제점과 사례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이 불가 할 경우 현장 농업인들의 고통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한-미 FTA 등 대외적인 변수와 농가소득 감소 등 대내적인 변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의 한 축산농가는 축사오폐수와 관련된 정책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아 퇴비사와 축사를 총 320평 신축했으나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만 해도 무려 1,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5. 향후 소송 전망 및 대응활동 계획

우선 소장은 법원에 접수가 되었다. 공판 시기는 빠르면 추석전이나 추석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재판의 결과는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재판의 승소 여부는 정부를 상대로 하고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닦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우리 사건과 유사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 판결을 받았고 정부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만약 기반시설부담금 폐소하더라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 대국민 홍보와 경각심을 준 만큼 농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폐소가 되더라도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적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 일부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통과와 정부의 대응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